

2023년도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 R&D사업 '고도화R&D 및 재구축R&D' 시행계획 공고

『2023년도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 R&D(고도화R&D, 재구축R&D)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5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대외 경영환경 속 선제적인 구조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(재)창출하는 기업의 구조혁신 기술개발 지원
- (고도화R&D)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신규 업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
- (재구축R&D) 구조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사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개발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 (재)창출 지원

지원규모(신규) : 20억원, 20개 과제 내외

지원유형 : 자유공모

지원대상 : 3. 지원내용 참조(공고문 3p)

공고기간 : 2023. 5. 31. (수) ~ 2023. 6. 30 (금)

* 전산접수기간 : 2023. 6. 15.(목) 00:00 ~ 2023. 6. 30.(금) 18:00까지(www.iris.go.kr)

□ 지원내용

내역사업	지원기간	지원한도	지원조건
고도화R&D	24개월	500백만원	정부지원금 80% 이내, 기관부담금 중 현금비율 10%이상
재구축R&D	24개월	300백만원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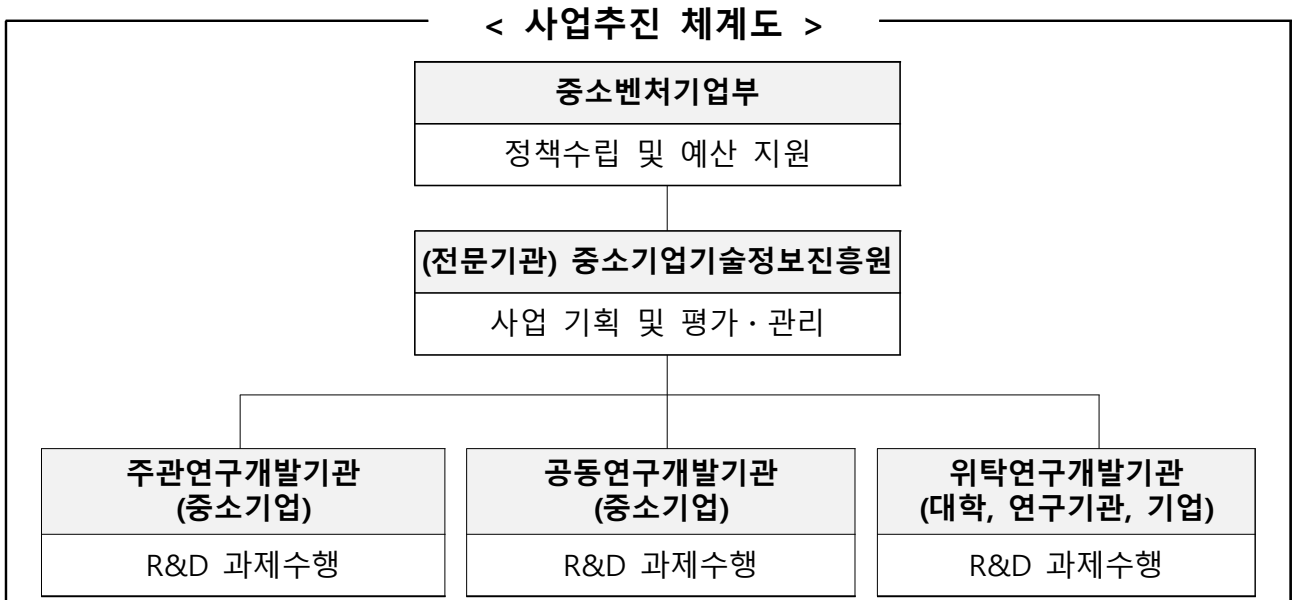
2. 추진근거 및 체계
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 등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
-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에 관한 특별법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&D 관리지침

*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은 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□ 추진체계



* 대학,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

3. 지원내용

□ 지원규모 : 20억원, 20개 과제 내외 (기업당 2년간 최대 300~500백만원 한도 지원)

내역사업	모집과제 수	지원기간	지원한도	지원예산
고도화R&D	10개 내외	24개월	최대 5억원	12.5억원 내외
재구축R&D	10개 내외	24개월	최대 3억원	7.5억원 내외

* 지원과제수, 기간 및 한도는 정부정책 및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분야 : 자유공모

○ 연구개발과제 주제, 내용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

□ 지원대상

○ (공통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서 정한 중소기업 (주관연구개발기관)으로서 사업별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
- (고도화R&D) 접수마감일 기준, 사업전환계획을 승인*받은 기업 중,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개발전담부서'를 보유**한 중소기업

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 전환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일 것

*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

- (재구축R&D)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선제적구조개선 프로그램 또는 중진공-캠코 협업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완료 중소기업

□ 연구개발비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 예산과 개발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아래의 연구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신청

*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,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('23.7.1)로부터 '23.12.31까지로 설정

<연구개발 기간 예시>

구분	1차년	2차년	3차년
하반기	'23.7.1~'23.12.31 (6개월)	'24.1.1~'24.12.31 (12개월)	'25.1.1~'25.6.30 (6개월)

- 선정평가 결과,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 조정 가능

*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

- 기관부담연구개발비 : 총 연구개발비의 20% 이상

*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+현물) 중 10%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

* 코로나-19에 따른 복합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기부 고시 제2023-11호, '23.2.14)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%이상 → 20% 이상으로 완화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(고도화R&D) 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연구개발비	개발기간
		현금	현물	합계		
1차년도	125	3.2	28.3	31.5	156.5	6개월
2차년도	250	6.3	56.2	62.5	312.5	12개월
3차년도	125	3.2	28.3	31.5	156.5	6개월
합 계	500	12.7	112.8	125.5	625.5	24개월
연구개발비 대비 비율(%)	80	-	-	20	100	-

<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(재구축R&D) >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정부지원 연구개발비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	연구개발비	개발기간
		현금	현물	합계		
1차년도	75	1.9	16.9	18.8	93.8	6개월
2차년도	150	3.8	33.7	37.5	187.5	12개월
3차년도	75	1.9	16.9	18.8	93.8	6개월
합 계	300	7.6	67.5	75.1	375.1	24개월
연구개발비 대비 비율(%)	80	-	-	20	100	-

□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(공통)

- (기존 인력 인건비) 기존 인력도 인건비 계상한도 내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,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% 초과 불가
- (신규채용 인건비)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*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
 - *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포함
- (위탁연구개발비)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(현물포함)에서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% 이내에서 계상 가능
- (연구수당)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
 - * 연구수당 계상 한도 :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(현금·현물 인건비, 학생인건비, 미지급 인건비 포함. 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)의 20% 이내 계상 가능
- (외부 전문기술 활용비) 기술도입비, 전문가활용비,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(현물 포함)의 40% 범위에서 계상 가능
- (간접비)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(미지급인건비, 현물, 위탁연구개발비 제외)의 10% 이내로 계상 가능
 - * 간접비 고시 비율,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

□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(고도화R&D만 해당)

- (IP-R&D 지원비용 필수계상) IP-R&D 전략수립 연계지원비용을 연구활동비의 지식재산 창출비로 3,000만원(부가세별도) 필수 계상

4.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

□ 평가절차

☞ 평가, 선정, 협약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

* (주관연구개발기관) 과제신청기업,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** 선정평가는 대면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나, 신청·접수 현황에 따라 비대면(화상회의) 방식으로 할 수 있음

□ 선정 평가방법

- (대면평가) 분야별 산·학·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구조혁신 실현가능성, 기술성,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를 추천

$$\text{대면평가 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- (과제선정) 대면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필요 시 후보과제를 들 수 있음

□ 평가기준

항목	평가기준	배점
구조혁신 실현가능성 (25)	고도화R&D 사업전환계획의 달성 가능성	25
	재구축R&D 구조개선계획의 달성 가능성	
기술성 (30)	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	10
	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	15
	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	5
사업성 (15)	사업화 계획의 가능성	10
	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	5
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(10)	선행연구개발 이력	10
기술개발역량 (15)	연구개발역량	10
	연구윤리	5
자금집행계획 (5)	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	5
합 계		100

* (동점자 처리 기준) 종합평점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성 → 구조혁신 실현가능성 → 기술개발역량 → 사업성 → 선행연구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□ 사전검토

-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)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

*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[붙임] 참조

5. 신청 및 접수 방법

□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

- 2023. 6. 15.(목) 00:00 ~ 2023. 6. 30.(금) 18:00까지

□ 제출서류

- ☞ 연구개발계획서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,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
- *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

연번	서 식 명		제출서류	
			필수	해당시
①	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지원 R&D 연구개발계획서 *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'23. 7. 1.로 기재 (단,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) * (연구개발계획서 본문1) 20페이지 이내 작성,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* (본문2)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	본문1	○	
		본문2	○	
②	신용상태 조회·정보 활용 동의서		○	
③	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	○	
④	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*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. 단,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		○	
⑤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		○	
⑥	중소기업 확인서		○	
⑦	고도화R&D	구조혁신지원 사전컨설팅보고서(사업전환진단보고서) 제공 동의서 (중진공 → 전문기관(기정원))	○	
	재구축R&D	구조개선 진단보고서, 경영개선 계획수립보고서 제공 동의서 (중진공 → 전문기관(기정원))		
⑧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			○

6. 기타사항

- (고도화R&D만 해당) 과제선정 시 「IP-R&D 전략수립」 지원(필수)
 - (지원대상) “고도화R&D과제” 최종선정 중소기업
 - (지원내용) 핵심특허 대응전략, R&D 정교화 전략, 신규IP 창출 전략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
 - (지원비용) 1차년도 과제수행 중 IP-R&D 전략수립 지원비용(30백만원, 부가세별도)을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여 집행
 - * IP-R&D 전략수립 세부내용은 <참고2> 참조

7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기업구조개선과)	시행계획 공고	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스케일업사업실)	신청·접수, 연구개발계획서 작성, 과제평가, 유의사항 등	044-300-0534
시스템문의	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콜센터	과제 접수(시스템 입력) 관련 사항	1877-2041

☞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: <https://www.iris.go.kr>
-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s://www.mss.go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“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” / http://pf.kakao.com/_llfqd

참고 1

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(증빙서류)

□ 가·감점

- (가점)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.

(단,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하며, 주관기관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가점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, 우대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.)

분야	우대사항	가점	확인방법 (증빙서류)
성과창출 강화 [공통가점]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	1점	최종평가확인서 등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* 최종평가 결과 '우수' 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	1점	최종평가확인서 등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	2점	표창장 등
	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	2점	표창장 등
생태계 보완 [공통가점]	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1점	「여성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
	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	1점	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(장애인등록증 확인 필)
	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	1점	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	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*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및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	1점	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구조혁신 전용가점 [사업가점]	구조혁신 탐색R&D사업을 주관기관으로 완료한 기업	3점	전문기관 확인

- (감점)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

연번	감점 사항	감점	확인
①	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	10점	전문기관 확인
②	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*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* 정당한 사유 : 1.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, 2.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	1점	

참고 2

[고도화R&D] IP-R&D 전략수립 연계지원 개요 (필수)

□ 지식재산(IP) 전략 수립지원 개요

- (지원개요) 기업의 신규 전환 업종의 국내·외 경쟁사 특허 도출,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IP 권리 확보 지원
- (지원비용)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액 현금(연구비)으로 부담

구분	IP 전략 수립지원
지원 비용 (R&D 예산)	3,000만원(부가세 별도), 연구비 중 R&D 연구활동비로 계상
지원 기간	R&D 기간 내 약 2.5개월 지원
지원 내용	<p>① 기업의 신규 전환 업종의 국내·외 경쟁사 특허/기술 동향 조사</p> <p>② 기술정보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최신 기술개발 흐름 파악 → 개발 방향성 벤치마킹 · 선도 경쟁사 기술(공정조건, 조성, 형상 등) 벤치마킹 · 전환 대상 기술에 대한 주요 문제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탐색 <p>③ 경영정보 활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경쟁기업의 기술개발 → 제품개발 → 경영방향 파악 · 관심 시장 경쟁사의 전반적 동향 파악 → 시장 파악 · 전환 대상 시장 진출 전략 방향 수립 도모 <p>④ IP 전략수립 지원하고 기업 IP 수준(기본, 심화, 사례)을 고려한 연구자 IP 역량 강화 교육 지원</p> <p>⑤ (필요시) 특허 분석 결과 “침해 위험도가 높은 기술/특허”에 대한 침해 대응 전략 수립(비침해, 무효화, 회피설계 방안 등)</p>

□ IP 전략 수립지원 결과

지원 전	지원 후
개별 유효 특허 분석 데이터 부족	R&D 관련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유효 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
주요 경쟁사 특허 분석 미흡	신규전환업종 분야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
R&D 과제 관련 IP 보유 미흡	R&D 과제 관련 전략적 특허 창출 계획 수립
R&D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진행	R&D 1년차부터 특허 조기 출원 가능
온라인 및 집체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	권역별 맞춤형 IP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IP 인프라 구축

* 주관연구개발기관(기업)에 지원되는 IP 전략수립 지원내용(IP Needs)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

□ IP-R&D 과제 수행일정

<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절차>

단계그룹		진행공정
R&D과제 협약 체결		전문기관-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&D 과제 협약 체결
IP-R&D 수행계약 체결		특허전략개발원 및 주관기관 간 전자계약 체결
협력기관 매칭		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전문위원 및 '협력기관 선정평가위원회'를 통해 선정한 특허 협력기관 - 주관기관 매칭
IP-R&D 연계지원 수행 (2.5개월)	지원방향 설정	전략위원회 명단 및 참여인력 보안서약서
		기업니즈
		과제목표
		협력기관 참여인력 확인서
	착수전략위원회	착수전략위원회 발표자료(최종본)
		① 착수전략위원회 회의록 / ② 주요참석자 의견
		과업범위 확정
	환경/특허분석	과제수행준비(기술트리, 키워드, 검색식)
		유효특허리스트
		특허분석(경쟁사/기술흐름 포함)자료
		환경/특허분석 결과 및 시사점
	중간전략위원회	현물부담금 이행 점검
	전략수립	핵심특허 추출
		IP-R&D 전략 수립을 위한 자료 분석
		맞춤형 전략도출
	최종전략위원회	최종전략위원회 발표자료(최종본)
① 최종전략위원회 회의록 / ② 주요참석자 의견		

* 위 일정은 기업 수요 및 현황 등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